문서번호	디자인건축과-
	8087
결재일자	2016.3.11.
공개여부	부분공개
보도여부	

	주무	관	건축관리팀장	디자인건축고	·장	도시관리국장	
	이정	은	이상옥	유형우		03/11 이동일	
			주무관	진정용			
협	조		주무관	김기식		주무관	김복남
			주무관	김은영		주무관	최석순

2016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

2016.3.11.

강 북 구

2016년 건축행정 종합 관리계획

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건물주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건축 법령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2016년 건축행정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<mark>1.</mark> 관련 근거

- 「건축법」제78조(감독)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(건축행정의 지도·감독)
- ○「건축법」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,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(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)
- ○「건축법시행규칙」제40조(위반건축물 표지 및 관리대장)

2.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수립

- □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계획
 - 건축허가, 착공신고, 사용승인 등 행정처리 계획수립
 - ㆍ 세움터에 의한 민원처리 철저
 - 건축민원 감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제시
 - 건축사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계획
 - · 건축허가 도서의 위법, 허위 설계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
 -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
 - 건축 공사장의 관리 및 안전 품질관리의 이행여부 확인
 - · 현장조사 ·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적정 및 구조안전확인서 적정여부 확인

○ 건축통계의 작성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

- · 세움터에 의한 통계 등 관리 및 활용
- 건축통계의 적정 유지관리
- 건축부조리 근절방안 계획
 - 건축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
 - · 건축공사 현장 지도·점검 실명제 이행
- 건축물 관리(지도 · 점검) 계획
 - ◈ 건축물 규모별 총괄 점검계획

구 분	점검 대상	점검 시기	비고
소형 건축물	연면적 2,000㎡ 미만 (자치구 교차점검)	분기별	서울시 계획시달 후 별도 계획수립
중형 건축물	연면적 2,000㎡ ~10,000㎡ 미만	하반기	자체계획수립
대형 건축물	연면적 10,000㎡ 이상	하반기	"
열린 공간 (공개공지 등)	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전수조사	상반기 하반기	"
중점 관리대상	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	하반기	"
신고대상 건축물	가설건축물 신고 등	하반기	"

□ 소형건축물 점검계획

- 점검대상
 - · 2,000㎡ 이하 소규모 건축물
- 점검시기
 - ㆍ 사용승인 후 6개월, 사용승인 후 2년
- 점검방법
 - · 서울특별시 점검계획에 의한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
- 점검결과 조치
 - 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
- 행정사항
 - · 서울시 세부계획 하달 후 자체계획 수립, 시행

중 · 대형건축물 점검 세부계획

● 점검대상 : 200건 ---- ('15. 12. 31.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)

┌ 연면적 10,000㎡ 이상 대형건축물 : 25건

└ 연면적 2,000㎡ 이상 10,000㎡ 미만 중형건축물 : 175건

절점기간: 2016. 09. 01. ~ 2016. 10. 10.(40일간)

● 점검방법

· 동지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점검

❷ 주요 점검사항

- · 면적증가, 조경제거 등 불법 건축행위
- 부설주차장 위반, 무단 용도변경 등

● 점검결과 조치

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

---- (결과보고 : 2016. 10월 중)

● 행정사항

- · 대형건축물의 경우 가능한 유관기관(소방서)과 협의하여 1회 합동점검
- · 점검대상 누락방지 및 관련공부 대조 철저
- · 구조변경,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정지시와 함께 관련부서(기관)에 통보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병행
- · 다중 이용시설물(판매시설, 관람집회시설, 병원 등)을 구분하여 중점점검 실시
- ·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

□ "열린공간"(공개공지, 건축선 후퇴 부분) 유지관리 점검

● 점검대상 : 공개공지, 도로후퇴,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공 보행통로

--- 2015. 12. 31.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

● 점검시기 : 2016. 05. 01 ~ 2016. 05. 30 (30일간)

● 점검방법 : 동지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

주요 점검사항

- ·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물 설치, 무단주차, 영업장 사용 여부
- · 공개공지 및 공개공지 안내판 무단 훼손 여부(조경, 조형물, 편의시설 등)

점검결과 조치

- 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(별첨 1)
 - --- (결과보고: 상반가-2016, 06 중/하반가-2016,12 중)

행정사항

- · 점검대상 누락방지 및 관련공부 대조 철저
- · 세움터의 "열린공간(공적공간) 관리시스템" 입력 철저
- ㆍ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

□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특별관리

● 점검대상

- · 기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
- · 신규('12년도 허가분, '13년도 허가분 중 미착공 및 신고분)
- 점검기간 : 2016, 08, 03, ~ 2016, 08, 31,
- 점검방법 : 동지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점검

정비방안

- · 위반사항 없이 설계변경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독려
- · 건축관계자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행정지도
- · 근본적인 건축법 위반 및 건축주의 시정의지가 없는 건축물 및 위반사항이 추가 발생한 건축물은 강력 행정조치
- ·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경과되거나 착공계는 제출되었으나 사실상 미착공 현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취소

❷ 점검결과 조치

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 ---- (결과보고 : 2016. 09월 중)

● 행정사항

- · 점검대상 누락방지 및 관련공부 대조 철저
- ·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

□ 신고대상 건축물 관리

- 점검대상
 - · 2015. 12. 31.이전 신고처리된 가설건축물(존치기간 연장포함)
- **절점기간**: 2016. 10. 01 ~ 2016. 10. 30 (30일간)
- 점검방법 : 동지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점검
- 주요 점검사항
 - · 무단용도변경, 구조변경, 면적증가 여부
 - · 존치기간 도래, 도시미관 저해 여부
- 점검결과 조치
 - 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
- 행정사항
 - · 점검대상 누락방지 및 관련공부 대조 철저
 - ㆍ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

□ 대학가 주변 불법 방쪼개가 점검

- **점검대상**: 관내 대학교(성신여대 운정캠퍼스) 인근 28필지
- 점검방법 : 동지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점검
- 주요 점검사항
 - · 다세대·다가구 주택 무단 세대(가구)수 증가행위
 - 근란생활사설(학원, 고사원), 교육연구사설(학원) 등을 주거용(원룸)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
 - · 건축법 시행령 제51조(거실채광 등)에 따른 채광 환기시설 설치 위반 등
- 점검결과 조치
 - ·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
- 행정사항
 - · 점검대상 누락방지 및 관련공부 대조 철저
 - ·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

□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

- ●점검대상 건축물 (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건축물)
 - · 다중이용건축물
 - · 연면적 3,000㎡이상인 집합건축물(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제외)
 -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
-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정지점검 의무 등 사전안내 철저
 - · 사전안내 : 건물별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
- 유지관리 점검 미보고 건축주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철저
- 익년 1월말까지 현황보고(대상건축물, 건축주 보고, 과태료 부과등)

□ 분기별 위반건축물 관리

● 위법 건축물 관리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작성 제출

□ 위반건축물 관리

-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
 - 위법내용 및 시정조치 일자 등 관리상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
- 위반 건축물의 표지설치
- 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
-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에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

□ 건축법 위반 건축관계자 행정관리

- - · 사전통지(안내) 후 이행강제금(과태료) 부과 및 고발
 - ·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관리

● 시공자

- · 「건축법」 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거 고발
- ·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
- 건축사(설계자, 감리자, 현장조사 ·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)
 - ·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 · 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및 「건축사 법」에 의한 행정처분

□ 위반건축물 해소계획 및 홍보

- 사용승인시(건축허가, 착공신고 포함) 건축주, 시공자, 감리자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등 안내문으로 홍보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
 - * 주차장 변경, 가구수 변경,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시 건축주, 시공자 등에 대한 책임 구분 등 충분히 안내
- 「건축법」개정으로 적법하게 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통보 추인허가를받을 수 있도록 유도 및 독려
-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
 - ·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 및 처벌규정,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반상회, 지역신문,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홍보
 - · 건축 관련 인 · 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(보)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실시
-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발굴하여 시행

3. 기타 행정안내

- 위반건축물 점검 전 부조리 예방 및 민원방지를 위한 점검자 사전교육 후 점검실시
- 가급적 합동점검 검토(유관부서 참여)
- 위법 건축물 관리자료 관리 철저
 - ---- (행정조치, 고발 및 행정처분, 위반 현황자료)

따로붙임: 1. 2016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【서식 1】

- 2. 2016년 열린공간(공개공지) 현황 및 점검결과 【서식 2】
- 3. 201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【서식 3】
- 4. 장기 미사용증인 건축물 관리카드 【서식 4】
- 5. 2016년 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 현황【서식 5】
- 6. 2016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【서식 6】

[[분임1] - 서식1 2016년도 중·대형 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

○ 기존 건축물 현황

(2015.12.31.기준)

							용도	<u>별</u> 현	년 황 (·	동수)						
구분	계	주상 복합	근린 생활	업무 시설	판매 시설	교육 연구	문화 집회	의료 시설	숙박 시설	위락 시설	노유자 시 설	공장	종교 시설	운동 시설	운수 시설	기타
합계																
중형																
대형																

○ 점검 및 위반 현황

								용 도	별 현] 황 (동수)						
구	분	계	주상 복합	근린 생활	업무 시설	판매 시설	교육 연구	문화 집회	의료 시설	숙박 시설	위락 시설	노유자 시 설	공장	종교 시설	운동 시설	운수 시설	기타
합계	점검																
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위반																
중형	점검																
3.9	위반																
대형	점검																
৸৺	위반																

○ 위반 유형 (동별 위법 건수 모두 기재)

		_											
	저 거	위 반				위	반 -	유 형	(중복기	건수)			
구 분	점검수	위 반동수	소 계	면적 증가	용도 변경	이격 거리	주차장	일조권	방화 구획	피난 시설	옥탑	조경	기타
합계													
중형													
대형													

○ 정비현황 (동별 조치내용 모두 기재)

	/	시정내역	격				조	치 내 용		
구분	위법	시정	미시정	건축주	시공자	건축사	०) व	생강제금부과		과태료
	동수	시정 완료	미시정	고 발	고 발	처 분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
중형										
대형										

○ 위법 건축물 현황

위치	건축주	건물 층 수	·규모 연면적	용 도	위법내용	조치내용 (행정처분)	시정 여부	비고
						건축주 고발, 이행강제금부과(예고) 시정지시 등	시정완료 시정중 미시정	중·대형 구분

2016년 (상·하)반기 열린공간 현황 및 점검결과

○ 점검대상 현황

							용 도	별 현	황 ((동수)	ı				
구 분	계	주상 복합	근린 생활	업무 시설	판매 시설	교육 연구	문화 집회	의료 시설	숙박 시설		노유 자 시설	공장	종교 시설	운동 시설	기타
열린공간															
위반현황															

○ 공개공지 현황

위치	건축주	건둘	물규모	건물용도	열린공간 (공개공지)	시설물	준공년도	비고
(건물명)	신축무	층 수	연면적	신한하다	(3개3기) 면적(m²)	/ 1/된 현	七百七二	(건물규모)
					1:300 2:200	1 : 파고라 1 2 : 의자 5		대형
					2 . 200	2 . 7/1 3		"
								중형
								2.2
								"

※ 작성요령 : 중·대형 구분하여 작성

○ 위반 현황

위 치	건축주	건 등 층 수	물규모 연면적	용도	위법내용	조치내용 (행정처분)	시정 여부	비고
					외부출입통제, 시설물(의자 등) 제거·훼손, 주차장 사용, 물건적치 등	건축주고발, 이행강제금부과, 시정지시등 내용 기재		대형

201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정비현황

○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

						9	- 도 별	를 현 š	항(동수	=)					
구분	계	아파트	연립 주택	다세대	다가구 단독	근린 생활	업무 시설	판매 시설	교육 연구	종교 시설	운동 시설	위락 시설	숙박 시설	공장	기타
기 존															
신발생															
합 계															

※ "기 존": 2012. 12. 31. 이전 건축허가분

* "신발생": 2013. 1. 1 ~ 12. 31.까지 건축허가분

○ 점검 결과

7 11	전건	사욧	허가	사 용	위반			위	반	유	형(중	·복건	수)		
구분	점검 동수	사용 승인	취소	승 인 미제출	동수	계	면적 <i>증</i> 가	용도 변경	주차장	조경	일조권	자하층	왁탑	이격 거리	꺄
합계															
기 존															
신발생															

※ 작성요령 : 동별 적발된 위법건수 모두 기재

○ 행정조치 현황 (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기재)

	/	시정내	격		조 치 내 용 별								
구분 양동	위법 동수	시정 완료	미시정	건축주 고 발	시공자 고 발	건축사 처 분	०) ठ	행강제금부과		과태료			
	동수		-1/1/6	고 발	고 발	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			
합 계													
기 존													
신발생													

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

	허가일자			_서며 ·		(2)
	착공일자		건축주(소유자)	-성명: -주소: *변동사	••	(1	,
건축물 현황	사실상 완료일자			*변동사	항:		
1 72 U 5	규 모	-층 수: -연면적:	용 도				
	현 상 태						
미사용승인 사유	□ 위법시공 □ 단순 미신청	위법시공 내용	-				
행정조치 경위	o 고발 o -일자 :	과태료부과 -일자: -금액: -징수여부:	o 이행강제금부과 -일자 : -금액 : -징수여부 :		o 기타 행 - - -	정조치	
(약식 현황도 : 위병							
(17 182 - 17	日午七 五八)						
		치유 가능성 및	바버 거든				
위반항목별	저촉법규	위반정도	해소방법(1)	체소티	방법(2)	대 (완(3)
- 기신청국 원 -	71411	11001	에上 8 日(1)	- U I (I)		-η <u>Ε</u> (0)	
_							
_							
		조사 · 면담 · 독	켜 · 조치 경위				
점 검 일 자		내 용				확 인	
		.,, 0			담 당	팀장	과 장

2016년도 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현황

○ 점검 대상 (동수)

구 분	전 체	2016년 점검대상									
7 1	점검대상	계	1/4	2/4	3/4	4/4					
합계											
다중이용건축물											
집합건축물 (연면적 3,000㎡이상)											
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											
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											

○ 보고 현황 (동수)

구 분	2016년	기한 내	기한 내		과태료 부과
1 七	점검대상	보고	미보고	건수	금액
합 계					
다중이용건축물					
집합건축물 (연면적 3,000㎡이상)					
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					
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					

○ 위반 현황 (동별 위법 건수 모두 기재)

	2016년	ા	I нì.		위 반 유 형(중복건수)										
구 분	2016년 점검 동수	위동	반수	소	계	면적 증가	용도 변경	이격 거리	주차 장	일조 권	방화 구획	피난 시설	옥탑	조경	기타
계															
다중이용건축물															
집합건축물															
다중이용업용도															
준다중·특수구조															

○ 정비현황 (동일 건물에 조치내용 모두 기재)

	,	시정내역	역	조 치 내 용 별									
구분	위반 시정 동수 완료		미시정	건축주 고 발	시공자	건축사 처 분	이행	이행강제금부과		과태료			
	동수	완료	P1/1/8	고 발	고 발	처 분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			
계													
다중이용건축물													
집합건축물													
다중이용업용도													
준다중·특수구조													

2016년 위법 건축물 관리현황 (분기별)

(단위:동)

					당 해 분	・기				
3	구 분	발생	시정	이행	강제금(D)	과	태 료(E)	고발	위반건축물 누 계(C)	비고
		(A)	(B)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	(F)	, , , ,	
	계									
 총 계	주거용 (주상복합제외)									
5 /11	상업용 (주상복합포함)									
	기타									
	계									
위법	주거용 (주상복합제외)									
시공	상업용 (주상복합포함)									
	기타									
	계									
무단 용도	주거용 (주상복합제외)									
· 등도 변경	상업용 (주상복합포함)									
	기타									
	계									
 기타	주거용 (주상복합제외)									
기타 	상업용 (주상복합포함)									
	기타									

※ 작성요령 : "엑셀"로 작성

- A : 해당분기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동수

- B : 해당분기에 시정된 위반건축물 동수

- C :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현재(해당분기)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전체 위반건축물 동수

- D,E,F: 해당분기에 부과한 이행강제금, 과태료 및 고발 건수

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

○ 위법건축물 적발

: 위법내용, 현황, 관련규정 등 위법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

○ 자진시정 지시 (1차)

: 적발후 7일이내 시행/ 건축물 대장 "위법건축물" 표기

-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(1차 30일 이상)
-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
-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

Д

< 공개공지 상습·반복 위반행위 행정조치 강화>

- · 이동식 가판대, 울타리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(1.2차)
- · 시정완료 시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반복 확인
- ·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즉시 고발

○ 확인 및 2차 시정촉구 지시

: 2차 시정지시 20일 이상

Д

- ※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
-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
- 이행강제금 부과청문(10일 이상).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
- 이행강제금부과 예고
- 전산(세움터) 입력

- 이행강제금 부과(1회)
- 건축주(시공자) 고발

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 (고발시점: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)

 $\hat{1}$

-서울시 건축과-17026호(2004.11.24)로 통보한 "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" 참조

○ 납 부 확 인

: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

Д

○ **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** :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

Д

-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
- 시정 재촉구지시
-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
- :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(부과시 관련규정 준수)
 -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총 3회 부과
- ※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, 제14조,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